2027년 농특산물 TV홈쇼핑 추진계획

❖ 관내 우수 농특산물의 TV홈쇼핑(공영홈쇼핑) 입점을 지원하여 유통경로 다원화 및 판매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

1 추진방향

○ 비대면 소비문화 증가에 따른 도내 우수 농특산물에 온라인 유통 판로 지원

○ 신규 중·소농가 등 홍보가 필요한 수요처에 홈쇼핑 입점 지원 및 농가 판로 확보, 소득 증대 기여

○ 신규업체 우선 지원

- 유통 판로가 확보된 대형업체보다 홍보가 필요한 신규업체 우선 선정

2 사업개요

○ 사 업 량 : 9개소(충청남도 전체)

○ 사 업 비 : 개소당 18,000천원(도비 2,700$^{15\%}$ 군비 6,300$^{35\%}$ 자부담 9,000$^{50\%}$)

○ 지원대상 : 농특산물 생산·유통(조합, 법인, 농가 등) 및 농식품 가공업체 등

○ 사업내용 : TV홈쇼핑(공영홈쇼핑) 영상 및 방송 송출료(50분/1회) 지원

- 동영상 제작 3,000천원, 방송 송출료 15,000천원

※ 기타 판매수수료 8% 및 택배비 등은 업체 부담

※ 동영상을 제작하지 않을 경우, 동영상 제작비를 재방송 가능

3 세부 추진 계획

1 사업 추진 체계

사업시행지침 수립	▶	신청 접수 및 추천	▶	품평회 및 사업자 선정
도('26.11.)		군('26.11.)		공영홈쇼핑('26.12.)

▶	예산편성 및 사업비 신청 · 교부	▶	사업시행	▶	실적보고 및 정산
	군('27.1.~3.)		사업자		사업자 → 군 → 도 (사업종료 후)

2 사업 신청 및 추천

○ 신청자격 : 관내 농특산물 생산·유통(조합, 법인, 농가 등) 및 농식품 가공업체

○ 접 수 처 : 소재지 읍·면 농산업지원팀 및 굿뜨래경영과 유통수출팀

- 제출서류 : 사업 신청서 및 기술서(상품이미지 포함)

○ 선정 요건 충족 시 추천

【 홈쇼핑 방송사 선정 요건 】

① 관내 농축수산물 사용

- 1차 관내 생산 농축수산물
- 2차 가공품(관내 농특산물을 50%이상 주원료 또는 부원료로 사용하는 제품)

② 홈쇼핑 방송사 요건 충족[참고2]

- 29,900원 이상 상품 구성 가능 제품
- 판매금액 환산 시 8천만원 이상 재고 보유 및 미판매 시 처리방안 확보 제품
- 방송 시연을 통해 상품의 효능을 충분히 설명 가능하며, 트렌드에 강하거나, 소비자 니즈 충족이 가능한 상품
-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고 저렴하게 판매 가능한 상품

3 사업자 선정

○ 품평회일정 : 2026. 12. 17.(목)

○ 선정요건 : 품평회 평균 7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

- 심사위원 : 공영홈쇼핑 MD 2인
- 심사기준 : 5개 항목

  [방송적합성(30), 가격만족도(20), 상품만족도(20), 소비자 구매 가능성(20), 지역특화성(10)]
- 감점요인 : 기 지원 횟수에 따라 점수 총점에서 감점(1회 -3, 2회 -6)

○ 전년도('26) 사업포기자는 다음 연도('27) 사업선정 제외

○ 선정순위 : 1순위 15개업체 선정, 신청 업체 미달시 2·3순위 단계별 추가선정

- 1 순위 : 최근 5년 이내 3회 미만 선정업체 중 70점 이상 고득점 순
- 2 순위 : 최근 5년 이내 3회 미만 선정업체 중 50점 이상 고득점 순
- 3 순위 :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선정업체 중 고득점 순

④ 사업 집행 및 정산

○ 방송협의 : 업체별 공영홈쇼핑 MD배정 후 방송 추진 일정 등 협의

○ 사업집행

- 시·군 교부결정 없이 임의로 사업집행 금지

  *교부결정서 없이 사업 집행시 보조금 지급 불가

- 자부담금 우선 집행 및 부족액 자부담 원칙
- 사업자는 방송 2주 전까지 홈쇼핑사에 사업비 송금
- 사업 계획변경(포기) 시 요청 공문 제출(사업자→군→도)

○ 사업정산

-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
- 사업자는 정산 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매출전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금계산서, 무통장 입금 확인증 및 적법한 증빙서류 제출

5 행정사항

○ 사업 신청 : **'26. 12. 1.(화)**까지

○ 품평회 개최 : **'26. 12. 17.(목)**

○ 사업자 선정 : '26. 12월 말

○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: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

참고 1 홈쇼핑 적합상품 및 평가요소

□ 적합상품 기준

- ○ 방송 시연을 통해 상품의 효능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상품
- ○ 트렌드에 강하거나, 소비자 니즈 충족이 가능한 상품
- ○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고 저렴하게 판매 가능한 상품
- ○ 최소 판매가 29,900원 이상인 상품(방송상품 구성시)
- ○ 전국 주문을 감안하여, 50분 방송기준 적정 재고 보유
  (판매금액 환산시 최소 8천만원 이상, 계약시 추가 협의 조정)

□ 세부 체크항목

판단기준	점수 (100)	세부 항목
방송적합성	30	방송시연성
		차별성 및 독창성
가격만족도	20	경쟁 상품 대비 가격적정성
상품만족도	20	시즌성 및 트렌드
고객만족도, 소비자 구매가능성	20	시장성(범용성)
		소비자 재구매가능성
지역특화성	10	지역 특산품 관련성